

동북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교육 제도화 및 교류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유영억*

대구대학교 환경교육과

(2011년 10월 7일 접수; 2011년 10월 26일 수정; 2011년 11월 22일 채택)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xchange in the Northeast Asia & the Pacific Region

Young-Eok Y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712-714, Korea

(Manuscript received 7 October, 2011; revised 26 October, 2011; accepted 22 November, 2011)

Abstract

The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exchange statu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Nor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requires an instigation. For example, a specific environmental policy is established after raising awareness to modify environmental policies, as the result of aggravation of damage due to pollution. Therefore, it is the necessary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policy in order to proceed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Second, even thoug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three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very similar, differences are apparent if one carefully examines the cont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ch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all agree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is necessary, but differ in their ideas of main body for advocating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maintenance level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rd,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i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re exists about a 10 years time gap between each country.

Fourt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change was form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irst. Then it was enlarged to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nd TEEN(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among three countries.

Key Words : Institutionalization, Exchange Reality, Environmental education, TEMM, TEEN

*Corresponding author : Young-Eok Y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712-714, Korea
Phone: +82-53-850-6952
E-mail: youngeok@daegu.ac.kr

1. 서론

21세기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종차별주의에서 파생된 민족 간의 전쟁, 지구의 멸망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핵무기의 개발, 상이한 가치관 및 세계관으로부터 유래되는 종교·종파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의 편견과 이기주의의 결과로 초래된 생태계파괴 등의 4대 쟁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진다.

특히,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생태계파괴에 관한 문제는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인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인류의 반생태주의적 가치관과 개발 우선 논리에 밀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가 현시점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문제해결에 관한 접근법으로는 주로 공해방지법이나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과 오염물질의 경감을 위한 환경공학적 과학기술 개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환경정책을 책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배려를 정책수단 혹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OECD, 1994)한 바 있으나 환경에 관한 배려가 국가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단계에서 각국의 개발 논리에 밀려 배제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나 NGO,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전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공해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高橋와 阿部, 2001), 한·중·일 3개국의 학교환경교육의 확산과정 및 기능에 관한 연구(Tetsuo, 2005) 등이 보고된바 있으나 한·중·일 3개국의 환경교육 제도화 및 교류실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안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동북아 지역에 위치,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그리고 일본의 환경교육 제도화 및 교류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환경교육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경교육전반을 살펴본 후 그 가운데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의 책정 등 환경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교육의 제도화를 달성, 종합적인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법제화 과정, 환경교육의 실태 및 교류와 관련된 사례를 문헌·Website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3.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교육 실태에 관한 분석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교육의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로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을 4개 그룹,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 한바 있다(Bhandari 와 Abe, 2000, 2001; Bhandari 등, 2002).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루어진 제1그룹, 라오스, 캄보디아, 솔로몬제도 등으로 구성된 제2그룹,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으로 구성된 제3그룹,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으로 이루어진 제4그룹으로 나누어 ①환경교육 가이드라인 및 환경교육계획의 책정여부, ②학교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모델사업의 시행여부, ③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환경교육을 일부 교과로의 설정여부, ④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환경교육을 독립교과로의 설정 유무, ⑤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연구의 실시여부, ⑥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사업실시 및 교원용 지도 매뉴얼(교재)의 제작여부, ⑦교원외의 환경교육 지도자양성여부, ⑧인쇄매체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계발(啓發)활동의 실시여부, ⑨어린이 이외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성인·사회교육)의 실시여부, ⑩환경교육센터·시설의 설치여부, ⑪데이터베이스 및 PC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실시여부, ⑫학교·지역의 환경교육콘테스트실시 및 시상여부 등 12개 항목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36 countries and their regions in the Asia Pacific Region(Bhandari and Abe, 2001)

	Grou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Group 1	Philippines	✓		✓		✓			✓	✓			
	Sri Lanka	✓		✓		✓			✓	✓			
	India			✓		✓			✓	✓			
	Vietnam	✓		✓		✓							
	Mongol	✓		✓		✓				✓			✓
	Pakistan	✓							✓		✓		✓
	Maldives	✓		✓	✓		✓			✓			✓
	Brunei	✓		✓								✓	
	Butane			✓								✓	
	Singapore	✓		✓		✓					✓		
	Tonga			✓						✓			✓
	New Caledonia			✓									✓
	Palau			✓						✓			
	Nauru												
Group 2	Laos			✓			✓	✓		✓			
	Cambodia			✓			✓	✓		✓	✓		
	Solomon islands			✓			✓	✓		✓			✓
	Fiji		✓	✓			✓			✓			
	Samoa	✓		✓		✓	✓						✓
	Papua New Guinea	✓		✓		✓	✓						
	Micronesia			✓		✓	✓						
	Vanuatu			✓		✓	✓			✓			✓
	Nepal	✓		✓		✓	✓	✓	✓				
	Myanmar	✓		✓			✓	✓					
	Niue								✓				✓
Group 3	Marshall Islands						✓	✓	✓				
	Bangladesh			✓	✓	✓	✓			✓			
	Kiribati			✓		✓	✓			✓	✓		
	Indonesia			✓	✓	✓							
	Thailand	✓		✓		✓	✓				✓		
	Austria	✓		✓		✓	✓			✓	✓	✓	✓
	Malaysia			✓		✓	✓		✓				✓
	Taiwan					✓	✓		✓		✓		
Group 4	South Korea	✓	✓	✓	✓	✓	✓	✓	✓	✓			✓
	China	✓	✓	✓		✓	✓	✓		✓	✓		✓
	Japan	✓	✓	✓		✓	✓	✓	✓	✓	✓	✓	✓

- ① Whether formulated environmental education (EE) guidelines and EE planning.
- ② Whether implemented EE model projects in school education.
- ③ Whether set EE as a part of subject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 ④ Whether set EE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a.
- ⑤ Whether implemented education and research about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⑥ Whether implemented teacher training project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developed manuals (textbooks) for teachers.
- ⑦ Whether produced environmental education leaders other than teachers.
- ⑧ Whether implemented development activities utilizing print media and broadcast media.
- ⑨ Whether implemented environmental education (adult education & social education) targeting those other than children.
- ⑩ Whether installed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 and facilities.
- ⑪ Whether implemented environmental education utilizing databases and PCs.
- ⑫ Whether implemented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sts in schools and regions and whether granted awards.

Table 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전체 12개의 항목 가운데 4개 그룹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항목은 3번째 항목인 ‘③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환경교육을 일부 교과로 설정여부’로 36개국 가운데 파키스탄(제1그룹), 나우루(제1그룹), 니우에(제2그룹), 마셜군도(제2그룹), 대만(3그룹) 5개국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가 ‘⑤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연구의 실시여부’, ‘⑥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사업실시 및 교원용 지도 매뉴얼(교재)의 제작여부’로 36개국 가운데 2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②학교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모델사업의 시행 여부’, ‘④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환경교육을 독립교과로의 설정 유무’ 등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소수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제4그룹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는 전체 12개 항목 가운데 ‘④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환경교육을 독립교과로의 설정 유무’를 제외한 11개 항목을 실시하는 국가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가운데 환경교육의 실시상황이 가장 우수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이 10개 항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의 실시 실태는 국가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교육의 전개과정 및 제도화 시점

3.2.1. 환경교육의 전개 과정

한국의 환경교육은 197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 단계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수준의 법적 및 제도적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환경보전 관련법은 환경부 소관이 약 50여개로 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관련법은 많은 편이나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환경교육에서 새로운 국가적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2년 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환경’ 과목이 개설된 이후 중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과 교원양성교

육 기관 등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처벌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 2010). 특히,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의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독자적인 편성이 가능하고, 중학교에 선택교과목으로 일·중 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정규과목이 개설되었다. 나아가 1997년 12월에 공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학교 재량시간’이 ‘재량활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연간 68시간으로 증가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도 ‘재량활동’이 신설되어 중학교에서는 연간 136시간, 고등학교에서는 204시간 배당되어 실시중이다(교과부, 1999).

그러나 학급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교과담임제를 취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배당시간에 비해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학력 저하 원인의 하나로 비난 대상이 되어 차기 예정된 교육과정 개편 시 시간수의 삭감 및 선택교과목에서의 ‘환경’과목 제외 등과 같은 우려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이와 최, 2002).

중국의 경우, 환경법체제는 헌법의 환경보호관계 규정, 환경보호기본법, 각종 환경보호단행법, 환경기준, 기타 부문법 속의 환경보호규범, 지방환경보호법규, 국제조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법제의 발전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경대학의 박서림 교수 등은 1949년 건국 후부터 1973년 전국 제1차 환경보호회의 개최될 때까지를 환경법의발생시기, 1973년부터 1978년 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三中全會·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까지를 환경법의 발전시기, 1978년부터 현재까지를 환경법의 초기완성시기로 구분하고 있다(張 등, 1990).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공업선진국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인구폭발, 급속한 도시화, 무분별한 국토개발 등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가 진행되었다. 그 해결을 위한 균중의 목

소리가 커져 갈 무렵 이에 따른 환경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 참석 후 귀국한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는 1973년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 중국의 환경기본법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시행초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이 제정되고, 1982년에 이르러 개정된 헌법에서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했으며, 각종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과 1982년의 나이로비회의(인간환경선언 10주년 기념회의)에서 채택한 나이로비 선언의 기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 양대 환경선언 속에 담겨진 정책방향을 환경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 1992).

중국의 환경교육은 환경보전정책·사업과 상호연대, 상호촉진 등의 밀접한 관계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79년 9월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에 최초로 환경교육을 규정하고 1981년 8월 환경보호간부학교 설립 등이 이루어진 초기단계(1972년~1982년)와 1983년 3월에 개최된 제2회 환경보호회에서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보호를 위한 대중교육이 중시되어 ‘중국환경보(中國環境報)’를 창간, 1990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보통고급중학교에 선택과목인 ‘환경보호’과목 개설을 요구하여 1991년 가을에 도입 결정 등이 이루어진 발전단계(1983년~1992년), 나아가 1992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국가환경보호국 주체로 ‘제1회 환경교육공작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보호와 환경교육은 기본”이라는 방침 발표, 1995년 ‘세계환경의 날’에 환경교육 선진학교, 우수한 환경교재 선정 표창 등이 이루어진 환경교육충실·발전단계(1992년~현재)로 구분한다(小澤, 2000).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콤비나트(Kombinat)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공업지대가 태평양벨트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더불어 교통, 소음, 자동차 배기가스, 가정 폐수, 폐기물 등의 도시공해와 산업공해가 중복되어 대도시의 환경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다. 1965년 이후 일

본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개발을 한층 가속화 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었지만,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967년 공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고 ‘소음규제법’, ‘대기오염방지법’, ‘항공기소음장해방지법’, ‘해수오염방지법’, ‘공해건강피해자구제특별법’ 등의 각종의 공해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환경교육은 다른 동북아시아의 나라들과 같이 1972년 스톡홀름(스웨덴)에서 개최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와 1975년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한 ‘국제환경교육 워크숍’이 계기가 되어 환경교육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1970년대 후반,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과에서 공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한 것이 환경교육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해교육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지구환경문제를 시야에 넣은 교육을 모색하고 있던 사람들과 자연과의 만남이나 자연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천해온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어 “지금부터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기본 틀을 수립·발전시키자”라는 움직임이 80년대부터 성숙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공해교육’이 ‘환경교육’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0년에는 ‘일본환경교육학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1991년에 문부성에서 ‘환경교육지도자료’를 간행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을 보다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2002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한국의 ‘재량활동’과 유사한 ‘총합학습시간’이 초·중학교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주체적인 활동이나 교과의 횡단적인 학습을 중요시하였다.

2003년 7월에 이르러 건전한 환경은 풍요로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사업자, 국가와 그 사람의 조직하는 민간단체(이하 국민, 민간단체 등)가 실시하는 환경 보전 활동 및 그 촉진을 위한 환경 보전의 의욕 증진 및 환경 교육이 중요함을 감안, 환경 보

전 활동, 환경 보전의 의욕 증진 및 환경 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수립하여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민간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기본 방침의 책정 및 기타 환경 보전의 의욕 증진 및 환경 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

육 추진에 관한 법률(環境の保全のための意欲の増進及び環境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환경교육학회지, 2003과 http://www.env.go.jp/policy/suishin_ho/03.pdf)이 제정되어 국민, 민간단체 등의 책무, 국가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학교교육 등에 있어서 환경교육에 관계된 지원, 직장에서의 환경보전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Fig. 1).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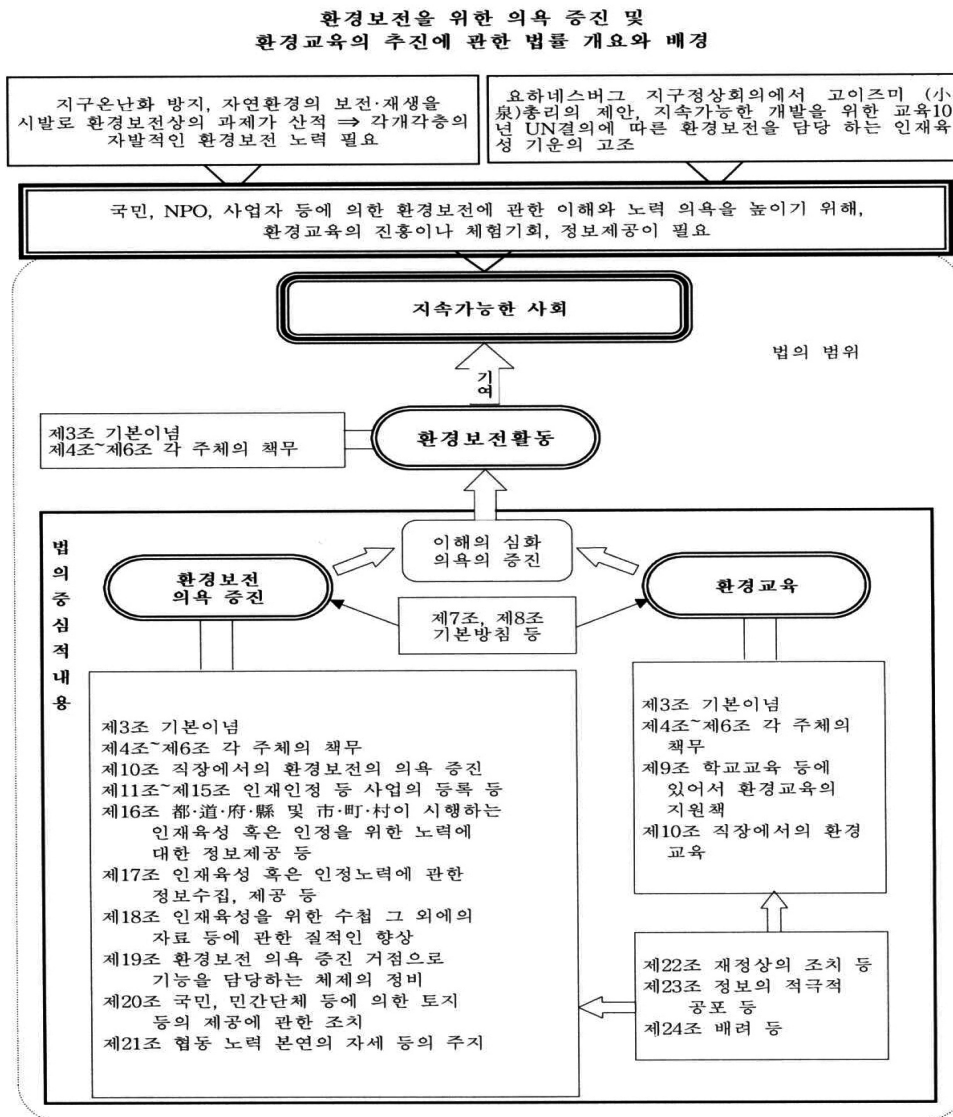


Fig. 1. Overview and background of Japan's 'Act on enthusiasm enhancemen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http://www.env.go.jp/policy/suishin_ho/03.pdf).

한 이 법률은 2003년 12월부터 시행, 2009년 제정된 한국의 ‘환경교육진흥법’ 추진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최, 2010).

3.2.2. 환경교육의 제도화 시점

환경정책의 정비 상황 측면에 볼 때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교육의 제도화 시점을 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환경보호기본법, 환경보전법, 공해대책기본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환경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경우,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1981년 교육과정(제4차)에 환경교육이 공시되었고, 중국의 경우, 1989년에 ‘환경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 1991년 선택교과에 ‘환경교육’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후 그 다음해인 1968년 학습지도요령에 공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환경법 제정과 환경교육제도화가 세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 간에는 환경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행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세 나라 모두 환경교육은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환경교육법상의 특성

3.3.1. 법제상의 환경교육에 관한 표현방식

학교 등 공적교육제도 가운데 환경교육의 제도화는 환경정책의 진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정책이 진척되어짐에 따라 환경 교육 제도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책정하는 ‘환경기본법’이나 ‘환경보호법’ 등에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추진’을 명기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중국의 ‘환경교육의발전’, 한국의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보급’ 등과 같은 기재로 인해 환경교육의 개념이 법제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본적인 환경법제에 있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술 측면, 다시 말해 현재 세 나라에서 각각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정리해보면 Table 3과 같다.

환경법에 기재된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1990년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함과 아울러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장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적정히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 환경교육에 노력해야한다.(제16조)”라고 환경교육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198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이 기본법으로 “국가는 환경과학교육의 발전, 과학·기술 연구의 추진, 환경보호의 발전,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과학에 관한 지식 공표 때에는 이것을 보호한다.(5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93년도에 제정된 ‘환경기본법’의 25조, 27조에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 진흥과 함께 환경보전에 관한 광보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사업자 및 국민이 환경보전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고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25조).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 진흥과 함께…….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의 보호에 힘쓰고 환경상항 이외의 환

Table 2. Time when three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mulated environmental laws and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al education

Section	China		South Korea		Japan	
	Year	Name	Year	Name	Year	Name
Enactment of basic law	1989	Basic ac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77	Act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1967	Basic act on pollution measures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1991	Introducing 'Environmental Education' as an Elective Subject	1981	Public announcement in the 4th national Curriculum	1968	Public announcement of instructional tips

Table 3. Expressions regarding environmental education listed in the basic environment act of three countries -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ection	Name of Basic Act	Enactment Year	Listed Items regarding Environmental Education
South Korea	Basic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990	Government should strive to distribut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well as to enhance nationals' sens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vernment should also strive for nationals' environmental education, so that they can manage and conserve the environment properly for the next generation. (Article 16)
China	Ac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9	The nation strives to develop environmental science education,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to develop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increase scientific technical skill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protect such endeavors when publically announcing knowledge about environmental science. (Article 5)
Japan	Basic Environmental Act	1993	The nation should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strengthen enterprises' and nationals'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y faithfully promoting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well as advertising activitie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o enhance active desire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ticle 25)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tec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rights and interests and to provide appropriate necessary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sides environmental situations to promote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o encourage voluntary activities by private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ticle 27)

정보전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7조).”라고 각각 환경교육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법제상의 환경교육의 비교

일본, 중국, 한국의 현행 환경법제상에서 보여주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술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의 책무”라는 문맥으로 환경교육의 실시 혹은 촉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법제이며, 중국의 법제에 있어서는 각각 ‘환경교육’이라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기본법’에 있어 “환경교육의 실시를 촉진한다.”라는 방침을 확립하고 있으며 환경기본법 가운데 “국가의 책무”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방침은 2003년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제정, 국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이 다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高橋와 井村, 2004).

셋째, 한국의 경우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어 “국민 환경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언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국의 경우는 198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가운데 “환경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교육은 법률에 의한 제도로 확립되어있는가? 에 관해서는 환경보호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1990년 12월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환경보호공작 강화에 관한 결정 가운데 “선전교육국은 환경보호의 선전교육(홍보교육)

에 힘쓸 수밖에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 환경 교육 홍보 교육에 노력하고, 전 국민, 특히 각급 간부의 환경지식, 환경법의 개념을 인식·보급시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徐와 須藤, 1994), 어떠한 특정법률에 의해 추진계획이 의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국가가 그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한국, 중국, 일본 각국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실시 및 추진 책임은 국가가 밀바탕이 되어 환경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들 수 있다.

3.3.3. 환경교육의 교류

한·중·일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국가 지역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를 다루어야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등의 범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중·일 3개국 모두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한·중·일 3개국의 환경장관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규모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99년부터 ‘한·중·일 삼국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를 매년 1회 3개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2002년 2월 중국(북경)에서 제2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개최

되어 한·중·일 3개국 간 환경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교류관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http://www.jeef.or.jp/TEEN/index.htm>).

Table 4에 제시한바와 같이 2000년 6월 한국(제주 시)에서 개최한 3국 환경장관회의 실무자회의에서 3개국의 환경교육관련 전문가 및 NGO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TEEN)’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2000년 11월 일본 시즈오카(静岡)에서 개최한 제1차 TEEN 워크숍에서 한·중·일 3개국이 환경교육네트워크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3개국의 ‘환경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2001년 1월 일본(東京)에서 제1회 TEEN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한·중·일 3개국의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국의 환경교육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환경교육실천가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 각각의 활동 실천사례 보고 및 환경교육학습방법 대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 7월 일본 군마 현(群馬県)의 ‘국립 아카기 젊음의 집(国立赤城青年の家)’에서 개최된 ‘제1회 동아시아환경교육 워크숍’이다(Fig. 2). 아울러 2002년 8월 베이징(北京)

Table 4. Outline of TEMM and TEEN exchange

Section	Exchange contents
1999. 01	- The first conference of environmental ministers of group of three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eoul, South Korea)
2000. 02	- The second conference of environmental ministers of group of three countries - South Korea, China, and Japan (Beijing, China)
2000. 11	- The first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workshop of group of three countries -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hizuoka, Japan)
2000. 12	- The first TEEN symposium (Tokyo, Japan)
2001. 01	- The first conference on TEEN database establishment (Tokyo, Japan)
2001. 08	- The second conference on TEEN database establishment (Beijing, China)
2001. 10	- The second TEEN workshop & symposium (Beijing, China)
2002. 01	- The third conference on TEEN database establishment (Seoul, South Korea)
2002. 09	- The third TEEN workshop & symposium (Seoul, South Korea)
2004. 01	- The fourth TEEN workshop & symposium (Shizuoka, Japan)
2004. 12	- The fifth TEEN workshop & symposium (Tianjin, China)
2005. 12	- The sixth TEEN workshop & symposium (Seoul, South Korea)



Fig. 2.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A): The first (Akagi National Youth House, Japan), (B): The third (Masan, South Korea), (C): The fifth (Dalian, China)

에서 개최된 ‘제2회 동아시아 환경 교육 워크숍’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교육그룹이 3개국 공동의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3개국 간의 확고한 교류가 시작 전 단계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한·중, 한·일 양국 간 민간차원의 긴밀한 교류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일·중의 첫 번째 대규모 환경 교육자 교류로는 ‘일·중 공동 환경교육심포지엄’로 1996년부터 3년간 계속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환경교육의 실정과 실천 활동 사례중심으로 발표회를 갖고, 제3차

심포지엄 종료 후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기법의 보급·전개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 측에서는 ‘일·중 환경교육 협력위원회’를 조직, 1998년 여름 이후 10회 이상 중국 각지 베이징(北京) 외에 우한시(武漢市), 충칭시(重慶市), 시안시(西安市), 내몽고 통요시(通遼市)에서 ‘일·중 환경교육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중 환경교육연수회’에서 일본 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참가 체험형학습법의 보급과 환경교육 기획자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2001년 3월, ‘일·중 환경교육협력회’는 지금까지의 ‘일·중 환경교육연수회’ 활동을 집약한 ‘참여식환

경교육활동지침(參與式環境教育活動指南)'-중국에서 실시한 환경교육연수회에서 강의와 활동은 주로 참가 체험형 학습방법의 보급과 기획자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지침서로 그 중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실시한 것에 대하여 정리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약 150 페이지에 달하는 환경교육연수회의의 간행물로 국제 교류 기금 아시아 센터의 보조금으로 출판(2001년 3월 중국 환경과학 출판사)한 간행물을 지칭한다. 이 지침서는 자연환경교육(제1장), 도시환경교육(제2장), 환경교육활동과 에코타운제작(제3장), 소그룹교류와가치의 명확화 활동(제4장), 체험식 학습법이론과 환경교육방안 작성(제5장), 환경교육의 지도와 보급(제6장), 중국의 환경교육활동방안(7장) 등 총 7장으로 구성됨.-를 간행한바 있다(Fig. 3). 이후 '일·중 환경교육연수회'의 중국 측 파트너도 '참여식환경교육활동지'를 적극 활용, 중국 각지에서 '환경교육연수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중국 측 파트너가 '일·중 환경교육연수회'의 적극적 참가자를 위주로 중국 최초의 환경교육NPO '녹지행(錄之行)'-일·중 환경교육연수회가 개최한 연수회 참가자 위주로 2002년 3월 15일에 결성된 중국 최초의 환경교육 NPO를

칭함. 정규 학교 교육에서 환경교육을 전개하는 조치 및 수단의 개척, 환경교육의 성공사례를 모은 텍스트 편집·출간, 한·중·일 삼국 청소년의 직접교류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교육실천의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일 합동수업연구회'의 한·일 양측은 1995년부터 매년 여름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발족 당시부터 역사교육과 함께 환경교육이 중요한 기동으로 자리매김 되어 한·일 양국의 환경교육 관계자가 상호 수업실천에 관한 보고를 해왔다.

이러한 한·중, 한·일 양국 간의 환경교육 교류가 합류되어 한·중·일 3개국 교류로의 발전계기가 된 것이 '제1회 동아시아 환경교육워크숍'이었다. 거기서 확인된 것은 '한·중·일 3개국의 환경교육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세 나라가 보다 가깝고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시키고 각국의 장점을 서로 흡수하는 것이 향후 동아시아 환경 교육의 보급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2002년 8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제2회 동아시아 환경교육워크숍은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며 새로운 구체적인 활동으로 '한·중·일 3개국 공동편찬의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교육교본'-2002년 8월 제2회 동아시아 환경교육워크숍에서 제시된 한·중·일 공동 편찬 환경교육 교본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각국에서 우수한 교재 등의 정리 및 번역을 착수, 2003년 7월에는 A4판 총 300장 분량의 자료를 3개국어로 번역을 완료하여, 2003년 지구환경기금의 보조금을 받아 7월 하순 경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의 국제교류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 11월 22일-24일 도쿄(東京市)에서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하여 각국 분담 분의 상호 수정 작업을 거쳐 2004년 1월에 한국(마산시)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 환경교육워크숍과 병행하여 최종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인을 거쳐 3월에 최초로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교육」 일본어 버전이 간행된 후 4월에 중국어 및 한국어 버전이 연이어 출간됨.-를 제작하기로 결정되었다(Fig. 4). 아울러 2005년 여름 중국(大連市)에서 3개국 어린이들이 '한·중·일 어린이환경캠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중·일 3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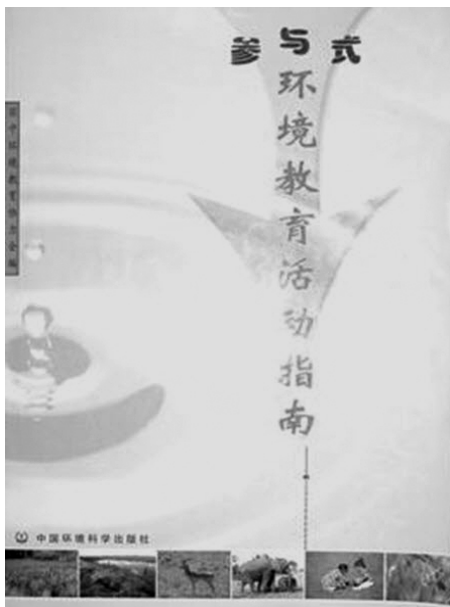


Fig. 3. Cover of China's 'guideline of participation-involved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Table 5. Outline of environmental education exchang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ection	Exchange content
1996. 03	- The first Japan and China joint Environmental Education Symposium (Beijing, China) - The second Japan and China joint Environmental Education Symposium (Tokyo, Japan) - The second Japan and China joint Environmental Education Symposium (Beijing, China)
1998. 08	- Established the 「Japan and China environmental education consortium」 and hosted environmental education training courses in various areas in China
2001. 07	- The first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Akagi, Japan), South Korea joined
2002. 01	- Renamed the 「Japan and China environmental education consortium」 into the 「South Korea, Japan, and China environmental education consortium」
2002. 08	- The second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Beijing, China)
2004. 01	- The third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Gyeongnam, South Korea)
2004. 01	- The fourth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and Symposium of group of three countries - Japan, China, and South Korea (Shizuoka, Japan)
2004. 04	- Published the 「Environment that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rning together」 in three respective languages - Korean, Chinese, and Japanese
2004. 07	- The fourth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Kitakyushu, Japan)
2005. 08	- Hosted the fifth East Asia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Beijing, China) and the Environmental Education Summer Camp for Youth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Dalian, China)



Fig. 4. Cover of Japanese ver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learned together with Japan, China, and South Korea' -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extbook jointly published b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교류결과는 Table 5에 제시했다(Tetsuo, 2005 and <http://www.env.go.jp>)

4. 결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교육 동향 및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나 사회제도, 정치체제, 경제력의 차이점 이외에도 환경정책의 정비 상황 측면에 볼 때 큰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교육을 분석해본 결과로 기본적인 환경법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환경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환경법 제정과 환경교육제도화가 세트화 되어 있음이다.

아울러 이들 국가 간에는 환경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의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세 나라 모두 환경교육은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환경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비교에서 환경교육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계기, 예를 들자면 공해에 따른 피해 확대 등, 환경정책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확산된 후 일정한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환경교육의 제도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환경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과정임이 밝혀졌다. 환경교육의 제도화 과정은 세 나라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

만, 이들 국가의 환경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모두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제도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며 또한 환경교육의 정비수준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해문제가 확대되어짐에 따라 공해반대운동 등도 일부에서 개시 되었지만, 그것이 정부의 환경보호법 제정과 헌법에 환경권이 명시될 때까지는 환경교육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이 법제가 제정된 이후 한국의 환경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가운데 환경 학습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환경교육의 진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환경 교육의 발전 측면에 정부의 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환경교육은 197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법적 및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보전 관련법은 환경부 소관이 약 50개이고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관련법 등도 많은데 비해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최, 2009), 2003년 3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일보, 2008).

이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반대)운동은 반정부운동으로 인식, 정부의 탄압 받아온 관계로 일본과 같이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고 말 할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와 민주화와 더불어 확대 되어온 한국의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환경운동이 양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질적인 발전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환경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수립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 참석을 환경보호에 관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환경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반대하는 시민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또한 발생하더라도 큰 운동으로의 변화를 상상하기 어려우며, 이는 중국에서는 시민운동을 허락하는 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중국 환경정책의 책정은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주도형 환경보호주의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분야에 있어 먼저 고등교육기관에서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보통교육에 환경교육을 실시한 것은 1990년 이후 여겨지며, 1991년 선택과목으로 ‘환경교육’ 교과를 도입한 후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환경교육은 먼저 고등교육의 정비를 시작으로 초등·중등단계의 교육기관에 환경교육의 도입이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패전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발생한 공해문제 및 환경파괴는 전쟁 전 혹은 전쟁 중에 발생한 것을 방지한 결과라 지적한 바 있으나 다시 공해가 큰문제로 대두된 것은 고도경제성장기에 돌입한 1960년대이다.

이시기에 ‘미나마타병(水俣病)’, ‘이따이이따이병(痛い病)’, ‘요카이치 천식(四日市喘息)’ 등과 같은 공해병이 다발, 심각한 공해문제를 발생시켜 공해반대운동이 일본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해반대운동 가운데는 ‘공해교육’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운동이 발생하고 교직원들에 의한 ‘공해와 교육’ 연구집회가 개최되었다(藤岡, 1985).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 정부에서도 공해대책을 정비하기 위해 후생성에 ‘공해과’를 설치, ‘공해대책기본법’을 제정 한 후 1968년 교사들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고시하여 처음으로 공해에 관한 학습이 언급되었으며, 1970년 공해국회라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공해대책기본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1971년에는 1968년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이 일부 수정을 거쳐 그해 4월부터 시행된바 있다(高橋과 阿部, 2001).

그 후 공해교육이 제도화 되어 학교교육 가운데 오

늘날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재차 환경문제 대한 관심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에 관해서도 재차 주목받기 시작, NGO 등에 의한 환경교육의 실천을 증시하는 ‘청리환경교육포럼’이 결성됨과 아울러 환경교육의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 ‘일본환경교육학회’가 1990년에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어 초등학교의 ‘이과사회’를 통폐합시킨 ‘생활과’가 신설되었다. 나아가 199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의해 지역 및 어린이 실정에 맞추어 횡단적·총합적인 학습을 하기위한 ‘총합적학습시간’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생활과’, ‘총합적학습시간’의 신설은 현행 학교교육 가운데 환경과 환경문제를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계기라 할 수 있으며 최근 2003년 7월에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환경보전의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 주체별 환경보전활동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교육의 제도화 실태는 이들 삼국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가 확립될 때까지 환경교육의 환경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주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교육의 추진 주체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환경 보호 법제의 정비 따라 환경 교육의 제도화가 진행된다는 과정은 이 세 개국에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가 환경교육의 제도화를 발전시킨 것은 현재 환경기본법제 및 환경교육이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공히 환경문제해결에 관한 접근법으로는 주로 공해방지법이나 환경보전법의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과 오염물질의 부하량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서 탈피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이들 환경관련제도의 강화, 과학기술개발 및 국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결국 환경파괴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인간들의 자연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을 개혁시켜 지구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교육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범 지구 차원에서 제기되어지는 유네스코(UNESCO)의 ‘지속 가능 발전교육의 기본적 사고 8개 영역’ 가운데 환경교육을 중추기반으로 에너지교육, 젠다(양성평등)교육, 세계유산교육, 다문화공생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뿐만이 아니라 최근 범 지구규모의 이슈로 떠오르는 빈곤박멸교육, 문맹퇴치교육, 에이즈확산방지교육, 분쟁방지교육, 식품안전교육 등 제반 교육영역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차원의 자율적 환경교육교류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제기관, 각국 정부, NGO, 기업 등 모든 주체들 간에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유,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로 동북아 지역 가운데 한·중·일 3국에 국한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측면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실행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에 다소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들 세 국가 이외, 예를 들면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에도 이 분석 프레임 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남겨진 검토과제이며, 이러한 환경교육에 관한 이해와 실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질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환경교육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및 학교 교육의 전략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접근방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교과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 노용희, 1992, 中國의 環境法制, 환경교육학회지, 3(1), 70-77.
- 유영익, 2010, 일본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교사,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학회, 23(3), 115-125.
- 이선경, 최석진, 2002, 한국의 환경교육의 현상, 한중일

- 환경교육심포지움 보고서, 일본환경교육포럼, 22-32.
- 최석진, 2010, 환경교육진흥법 제정과 국가 환경교육종합 발전 방안의 의미, 환경교육학회지, 23(1), 112-120.
- 환경일보, 2008, 12월 24일(발행).
- 부록, 2003, 일본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추진 및 환경 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학회, 16(1) 91-97.
- 小澤 紀美子, 2000, 中国の環境教育, 東京学芸大学環境教育実践施設研究報告書, 93- 99.
- 森茂 岳雄, 1998, 中国の環境教育の発展と現状, 平成9年度文部省委託調査報告書.
- 方修琦, 1999, 中国の環境教育の概況, 北京師範大学出版社.
- 高橋 正弘, 井村 秀文, 2004, 日本における環境教育政策の決定要因に関する研究, 環境情報科学論文集, 18.
- 徐開欽, 須勝 降一, 1994, 中国における環境政策と環境教育, 資源環境対策, 30(15), 21-29.
- 高橋 正弘, 阿部 治, 2001, 公害教育の制度化に関する考察, 環境教育學會誌, 11(1), 8-15.
- 勝岡 貞彦, 1985, 日本における環境学習の成立と展開, 環境教育の理論と実践, あゆみ出版社.
- 植田 和弘, 1996, 環境経済学, 岩波書店, 東京.
- 張坤民, 金瑞林 主編, 1990, 環境保護法講話, 清華大學出版社.
- OECD, 1994, OECDレポート: 日本の環境政策, 中央法規出版社, 東京.
- Bhandari, B., Abe, O., 2000,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Pacific Region: Some Problem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Review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1(1).
- Bhandari, B., Abe, O., 2001,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Pacific Region: Status, Issues and Practic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Kanagawa.
- Bhandari, B., Abe, O., Takahashi, M., and Nakahata, A., 2002, The path to Success: Some Pioneering Examp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GES, Kanagawa.
-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Agency, 199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GES, Kanagawa.
- Tetsuo Suwa, 2005, Spreading Processes and Features of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18(2).
- http://www.env.go.jp/policy/suishin_ho/03.pdf, 環境保全のための意欲の増進及び環境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 <http://www.tuat.ac.jp/~asaoka/nichukan.html>, 日中韓環境教育の歩み.
- <http://law.e-gov.go.jp/htmldata/H15/H15HO130.htm>.
- <http://www.jcef.or.jp/TEEN/index.html>.